##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77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한병도・이기헌・이해식

정태호 • 박 정 • 진선미

윤준병 · 김영배 · 서미화

위성곤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4년도 1분기에도 0.76명으로 역대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극심한 초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국가소멸을 초래할 것이 라는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음.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법적 권한 부족과 기존 정책 반복 등 근본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저출생과 같은 인구문제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전략을 총괄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총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및"을 ", 인구전략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명을"을 "3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 장관이"를 "교육부장관, 인구전략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 및"을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구전략부장관은 인구정책 및 사회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 중 "부총리의"를 "부총리, 인구전략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인구전략부

제29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인구전략부) 인구전략부장관은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수립·총

괄·조정,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인구전략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인구전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인구전략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인구전략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1항에 따라 인구전략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 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인구전략부장관의 행위 또는 인구전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 보자(인구전략부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전략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인구전략부, 인구전략부장관, 인구전략부장관, 인구전략부장관, 인구전략부장관, 인구전략부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
	승)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	
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	
임하는 부총리 <u>및</u> 제26조제1항	, 인구전략부장관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	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	제19조(부총리) ①
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부총리 <u>2명을</u> 둔다.	<u>3명을</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③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교육부장관, 인구전략부장관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 <u>사회</u>	⑤ <u>및</u>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	

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 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 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 육부장관이 겸임하는 <u>부총리의</u>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 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2. (생략) <신설>

<u>3.</u> ∼	<u>19.</u>
-------------	------------

<u>.</u>	
⑥ 인구전략부장관은 인구정	<u> </u>
및 사회 정책에 관하여 국두	<sup>1</sup> 총
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형	<u>생정</u>
기관을 총괄·조정한다 <u>.</u>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부총리,	인
구전략부장관이 겸임하는 투	크총
- 리의	
<del></del>	
_	
· 제26조(행정각부) ①	
<del>-</del> .	
· 1.·2. (현행과 같음)	
3. 인구전략부	
<u>4.</u> ~ <u>20.</u> (현행 제3호부터	제1

	9호까지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29조(인구전략부) 인구전략부장
	관은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수
	립・총괄・조정, 저출생・고령
	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한다.
<u>제29조</u> ~ <u>제45조</u> (생 략)	<u>제30조</u> ~ <u>제46조</u> (현행 제29조
	부터 제45조까지와 같음)